강원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1.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문항 총괄표

가. 문항 총괄표

			입학		I 47 O I	계열 및 교과									
평가	입학전형	계열	모집요강에 제시한	문항 번호		인문 · 사회			과학				교과		
대상			자격 기준 과 목 명	면오		국어	사회	도덕	수학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 과학	영어 7	기타
	학생부종합 (미래인재전형)	인문사회/ 자연과학/공학													
	학생부종합 (소프트웨어인재전형)	공학	해당 없음												
면접 고사	학생부종합 (평생학습자전형)	자연과학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인문사회/ 자연과학/공학	<u> </u>												
	학생부교과 (재직자전형)	자연과학													

[※] 우리 대학의 면접고사는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으므로 고교 교과 과정 범위와 수준을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문항 총괄표 작성 대상이 아님

나. 우리대학 대학별고사 운영 현황

대학별 고사	전형명	계열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방법	
	학생 <u>부종</u> 합 (미래인재전형)	인문사회 자연과학/공학	학업역량/ 인성/ 잠재역량		학습탐구경험과 문제해결능력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정도		
	학생부종합 (소프트웨어인재전형)	공학			대학에서의 학업 목표와 의지 공동체 의식 및 협업능력 서시성과 했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확인	
	학생부종합 (평생학습지전형)	자연과학			■ 성실성과 책임감 ■ 의사소통능력 ■ 도전의식		
면접 고사	학생부종합 (특성화교졸업자전형)	인문사회 자연과학/공학			■ 자기주도성 ■ 자기관리능력		
	학생부교과 (재직자전형)	학생부교과 자연과학	지원	열정	■ 해당 전공에 진학하게 된 동기 ■ 대학생활에 대한 태도 및 마음가짐		
			동기	목적의식	■ 인생의 전반적인 목표 및 관심	지원자 확인	
		기 리쉬 ㅋ	학업	적성	■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과 적성 ■ 입학 이후 학업 계획	기면서 국민	
			계획	역량	■ 전공분야에 대한 미래 설계		

[※]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는 평가지표가 학업역량, 인성, 잠재역량, 지원동기, 학업계획으로 이는 교과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하거나 지원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가.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판단기준						
	항목	세부내용	이행 점검 결과				
	1. 관련 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① 기간 내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문항과 답안 공개의 충실성)	0				
대학별 고사	0 시체회스 어린터리	② 문항 총괄표 작성의 충실성					
시행 관련	2.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항목 준수	③ 문항 제출 양식(문항카드) 작성의 충실성	해당없음				
이행 사항 점검		④ 장별 내용 제시 여부					
	3. 선행학습 영향평가	⑤ 위원회의 외부위원 포함 여부	0				
	위원회 구성	⑥ 현직 고등학교 교사 포함 여부	0				

※ 우리대학의 대학별고사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문항 총괄표 작성, 문항카드 작성, 장별 내용 작성은 해당 없음

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1) 강원대학교 학칙

제39조의2(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총장은 대학별고사(글쓰기, 필답고사, 면접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7.)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2.17.)

- 2) 강원대학교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전문 부록 참조)
- 영향평가의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

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1) 위원회 구성

구 분	인 원 비 율		구성 내역					
내부위원	6명	75%	입학본부장, 입학과장, 전임교원 4명					
외부위원	2명	25%	현직 고교 교사 2명					

2) 위원 위촉 현황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비고
위 원 장	입학본부	본부장	윤*중	당연직
위 원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교수	최*열	
"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교수	김*중	
"	경영회계학부 경영학전공	교수	김*섭	
"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신*균	
"	입학과	과장	이*호	당연직
"	강일여자고등학교	교사	최*호	현직교사
"	성수여자고등학교	교사	이*범	현직교사

라. 2023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및 절차

- 1)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2023. 3. 10.(금)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실시: 2023. 3. 11.(월)~3. 17.(금)
- 3)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보고: 2023. 3. 20.(월)
- 4)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심의 및 확정: 2023. 3. 22.(수)~3. 28.(화)
- 5) 평가 결과 홈페이지 공고 및 보고서 제출: 2023. 3. 31.(금)

3.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노력

- 가. 우리 대학에서 실시하는 면접고사의 평가기준과 질문내용이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도록 설계하였음
- 나. 면접고사 시행에 앞서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면접 시 유의사항 및 질문범위에 관한 사전교육 실시하고 있음

4. 문항 분석 결과

- 가.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면접고사)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평가기준이 **학업역량**, **인성**, **잠재역량**으로 이는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으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나. 학생부교과전형 재직자전형 면접의 경우, 평가기준이 **지원동기, 학업계획**으로 교과 지식과 관련이 없으며, 지원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다. 따라서 우리대학의 면접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대학별고사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5.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 면접위원이 교과 지식 관련 문항으로 수험생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역량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면접교육 실시

6. 부록 [관련 규정]

강원대학교 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7. 28. 규칙 제1479호 제정 2016. 11. 22. 규칙 제1551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및 학칙 제39조2에 의거 대학입학 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예.체능 계열의 실기고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2)
- 제3조(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①제2조에 따른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위원회는 입학본부장 및 입학과장의 당연직 위원과 입학본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전임교원 및 외부전문가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입학본부장이 된다. 다만, 위원 중 1명 이상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2)
 - ③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입학과 주무자가 된다.
- 제4조(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위원회에서 수행한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
 - 3.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4.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고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 5. 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6조(연구위원회) ①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 2.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3.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
 - ②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위원장이 정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 제7조(서면 의결)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조(결과의 공시)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평가 결과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 제9조(수당 등 지급)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연구위원회와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기타) 선행학습 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15. 7. 28. 규칙 제147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22. 규칙 제155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